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87
----------	-------

발의연월일 : 2026. 5. 15.

발 의 자 : 서천호 · 정성국 · 김은혜
박충권 · 강명구 · 김승수
박덕흠 · 김선교 · 김장겸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대상과 별도로 협정의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비상대비훈련) ①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 총톤수가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의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퇴선훈련 또는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